

EU CSRD · ESRS 이해 및 대응방안

삼일PwC ESG Platform

September 2023

Contents

1. CSDR History	3
2. CSDR/ESRS 상세 내용	4
(1) CSDR 공시 대상 및 시기	4
(2) ESRS 주요 항목 및 내용	5
3. ESRS(EFRAG) vs. IFRS S1, S2(ISSB) 비교 분석	9
4. ESRS First Set 최종(안) 주요 내용(2023.7.31)	11
5.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12

지난 6월 ISSB가 IFRS S1(지속가능성공시 일반 요구사항), S2(기후변화 공시 요구사항)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이후, 이어서 EU 집행위도 지난 7월 ESRS First Set 공시를 확정하였다. 글로벌 주요 3대 공시 기준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알려져있는 ESRS First Set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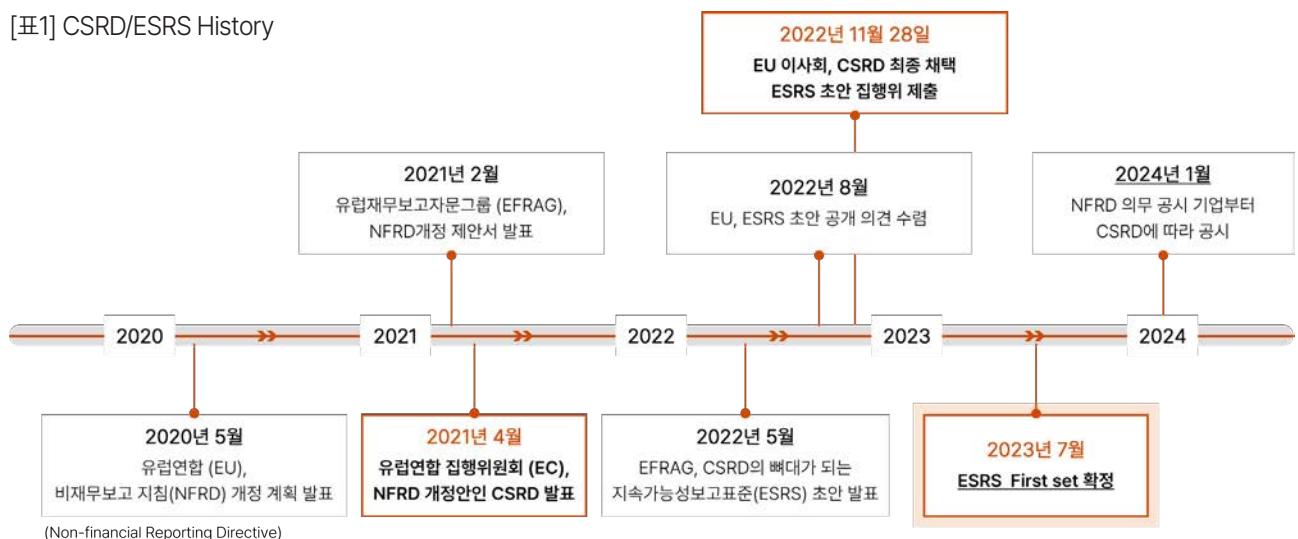
1. CSRD History

EU는 2017년부터 비재무정보공개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시행해왔다. 2019년 12월, EU는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받은 로드맵이자 정책 패키지인 'European Green Deal(이하, EU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EU내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비재무정보'만을 공개하는 지침인 NFRD에 따라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성·신뢰성·연관성이 부족하여 기준의 개정이 요구되었으며, EU는 ESG 공시가 비재무 정보(Non-Financial)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Financial Related) 관점을 가지고 NFRD를 개정한 CSRD를 준비하였다.

EU는 2020년 5월, NFRD 개정 계획을 발표 후, 약 3년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CSRD를 EU이사회가 2022년 11월 28일 최종 승인하고, 약 3주 간의 공식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2022년 12월 16일) 2023년 1월 6일 공식 발표하였다. EU 회원국은 18개월 이내 자국 법률에 CSRD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해야하며, NFRD에 해당하는 의무 공시 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를 2025년 1월부터 공시를 해야한다.

[표1] CSRD/ESRS History



2.CSRD/ESRS 상세 내용

1) CSRD 공시대상 및 시기

CSRD에 적용받아 공시를 준비해야하는 기업은 여러 요건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EU 소재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EU 역내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EU 규제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경우 2024년 회계 연도에 대한 정보를 2025년부터 바로 공시해야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한국 기업은 3개 이하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공시 의무화 대상인 비상장기업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EU 소재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총 자산 2천만 유로(약 291억원) 이상, 순 매출액이 4천만 유로(약 584억원) 이상, 직원 수 250명 이상이 EU가 정한 대기업 기준이며, 상기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2025년 회계연도 데이터를 2026년에 공시해야 한다. EU기업이 아니더라도 총 매출액이 4천만 유로(약 584억원) 이상인 지점이나 종속기업을 보유하거나 EU 역내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약 2,190억원) 이상일 경우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럽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이 조건에 해당되며, Non-EU 기업을 위한 공시 기준은 2024년에 발표될 Second Set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준 제정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표2] CSRD 공시대상 및 범위

공시 대상	'25년 FY24	'26년 FY25	'27년 FY26	'28년 FY27	'29년 FY28	'30년 FY29	공시 범위
기존 NFRD 적용 기업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 은행, 보험회사)							해당 기업(EU 소재 종속기업)이 직접 ESRS 기준 보고
EU 규제시장 상장 (Regulated market) Non-EU 지배기업							해당 Non-EU 지배기업이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ESRS 보고
EU내 설립 대기업 ¹ (Non-EU 기업의 EU 소재 종속기업 포함)							해당 기업이 직접 ESRS 기준 보고 (Non-EU 기업의 EU 소재 종속기업이 직접 ESRS 보고)
EU내 상장 중소기업 (초소형 ² 상장기업 제외)							FY28 까지 공시 유예 가능 해당 기업이 직접 보고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공시 기준 적용 예정, ESRS 2nd set)
EU내 일정매출액 초과 Non-EU 지배기업 ³							Non-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 으로 보고 (Non-EU 기업을 위한 특정 공시 기준 적용 예정, ESRS 2nd set)

1)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s) 요건: ① 총 자산 > 2천만유로 (약 291억원) ② 순 매출 > 4천만유로 (약 584억원) ③ 직원 수 > 250명 중 2개 이상 해당

2) 초소형 상장기업: 직원 10인 이하, 순매출 70만유로 이하, 자산총액 35만유로 이하 중 2개 이상 해당

3) Non-EU 지배기업 공시 의무 조건:

- ① EU 역내 총 매출 > 4천만유로 지점/대규모 종속기업 보유 or 상장된 중소기업 보유 and
- ② EU 역내 총 매출 > 1억5천만유로 (약 2,190억원)

* EU회원국들은 CSRD를 기준으로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국가별 상세 법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시 시기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EU CSRD와 상이할 수 있다.

2.CSRD/ESRS 상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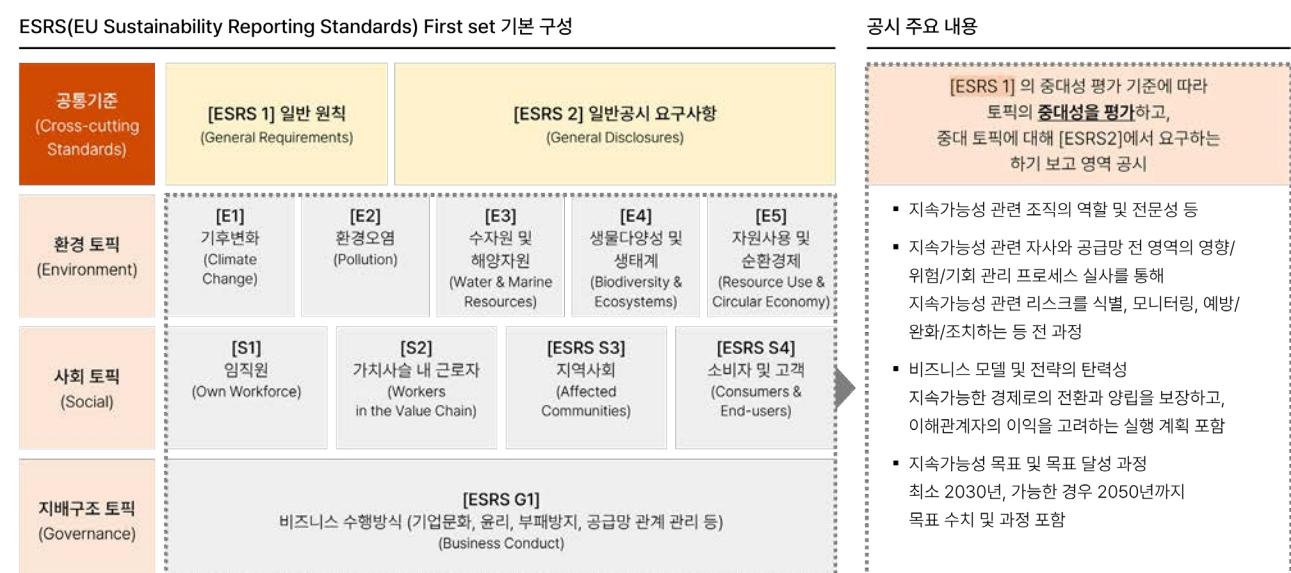
2) ESRS 주요 항목 및 내용

CSRD공시를 위해서는 공시를 위한 기준서인 ESR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SRS First Set은 공통기준 2개와 토픽별 총 10개의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별 혹은 토픽내에서 단계별로 공시가 유예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ESRS의 기본 구조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 ESRS 1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후, 기업이 선정한 중대한 토픽에 대해 ESRS 2가 요구하는 사항(조직의 역할 및 전문성, 자사와 공급망 전 영역의 영향·위험·기회 관리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목표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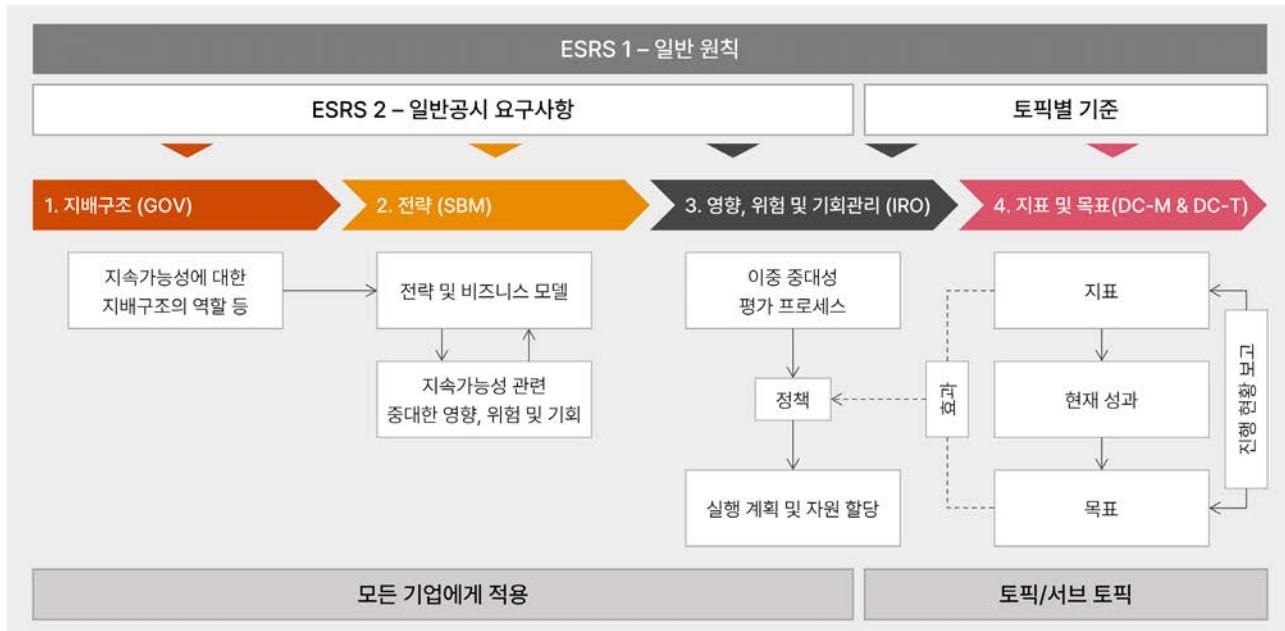
[표3] CSRD와 ESRS의 관계



[표4] ESRS(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irst set 기본 구성



[표5] ESRS First Set 기준 간 상호작용 구조



1 ESRS 1 일반원칙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시 적용되는 필수 개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ESRS 2 일반공시 요구사항

ESRS 2는 TCFD Framework을 반영하고 있지만, TCFD가 기후변화 토픽에 국한되어 있다면, ESRS는 지속가능성 전 영역 10개 토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SRS 2는 기준서 중 유일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배구조, 리스크/기회 관리에 대한 부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전략과의 연계,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 대한 측정 방법이나 경과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6] ESRS 2 일반공시 요구 사항

지배구조	GOV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관리 및 감독기구의 역할 상기 기구에 제공된 정보 및 지속가능성 이슈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의 보상정책 통합 지속가능성 실사보고서 관련 정보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영향 위험 및 기회관리	IRO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포함된 ESRS 공시 요구사항 (중대성 평가결과에 따른 공시지표Index)
전략	SBM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켓포지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견해 중요한 영향/위험/기회와 전략/비즈니스 모델간의 연계
지표 및 목표	DC-M and DC-T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정한 목표에 대한 경과 및 성과 측정 방법

3 ESRS 토픽별 지표 현황

환경분야의 총 5가지 기준서로 기후변화(E1), 환경오염(E2),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E5)로 구성되어 있다. E1부터 E5에서 요구하는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목표, 배출량/사용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픽별 리스크/기회로 인한 재무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의 경우 TNFD에서 규정하고 있는 18개 산업¹에만 적용된다. 특히, 목표 같은 경우 ISSB가 꼭 지구 온도 상승폭 1.5°C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ESRS는 유럽 그린딜 내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유럽이 환경 목표를 보다 더 도전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국가별 세부 지침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Social) 지표에서는 S1과 S2로 분리해서 자체 임직원과, 가치사슬 내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부분도 별도 토픽이 아닌 S1과 S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농업, 건설, 오일&가스, 화학, 광업, 제약바이오, 소비재 등

[표7] ESRS Environment(환경) 지표 : E1~E5

[E1] Climate Change (기후변화)	E1 (총 9개의 요구사항)	E1-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E1-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리를 위한 정책
		E1-3 기후변화 정책 실행 및 리소스
		E1-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목표
		E1-5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믹스
		E1-6 Scope 1, 2, 3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E1-7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통해 감축되거나 완화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
		E1-8 내부탄소가격
		E1-9 중대한 물리적/전환 리스크 및 잠재적 기후 관련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효과
[E2] Pollution (환경오염)	E2 (총 6개의 요구사항)	E2-1 환경오염 관련 목표
		E2-2 환경오염 관련 실행 및 리소스
		E2-3 환경오염 관련 목표
		E2-4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E2-5 유해 물질 및 최고유해물질
		E2-6 환경오염 관련 영향, 위험,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효과
[E3] Water & Marine Resource (수자원 및 해양 자원)	E3 (총 5개의 요구사항)	E3-1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목표
		E3-2 수자원 및 해양 자원 관련 실행 및 리소스
		E3-3 수자원 및 해양 자원 관련 목표
		E3-4 물 소비량
		E3-5 수자원 및 해양 자원 관련 영향, 위험,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효과
[E4] Biodiversity & Ecosystems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E4 (총 6개의 요구사항)	E4-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전환 계획
		E4-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
		E4-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실행 및 리소스
		E4-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
		E4-5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영향 지표
		E4-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영향, 위험,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효과
[E5] Resource Use & Circular Economy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E5 (총 5개의 요구사항)	E5-1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E5-2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실행 및 리소스
		E5-3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
		E5-4 자원 유입
		E5-5 자원 유출

[표8] ESRS Social(사회) 지표 : S1~S4

<p>[S1] Own Workforce (임직원)</p>	<p>S1 (총 17개의 요구사항)</p>	S1-1 자체 인력 관련 정책 S1-2 임팩트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프로세스 S1-3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S1-4 자체 인력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 자체 인력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 그리고 임직원 관련 조치에 대한 효과성 S1-5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며, 중대한 리스크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 S1-6 자체 인력의 특성 S1-7 자체 인력의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S1-8 단체교섭 적용범위 및 사회적 대화 S1-9 임직원 다양성 S1-10 적정 임금 S1-11 사회 보장 S1-12 장애인 S1-13 교육 및 역량 개발 S1-14 건강 및 안전 S1-15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S1-16 보수 (임금격차 및 총 보수) S1-17 사고, 고충 및 심각한 인권 영향
		S2-1 공급망 내 근로자 관련 정책 S2-2 임팩트 측면에서 공급망 내 근로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절차 S2-3 공급망 내 근로자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교정하기 위한 절차 S2-4 공급망 내 인력에게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 관련 조치에 대한 효과성 S2-5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며, 중대한 리스크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
		S3-1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관련 정책 S3-2 임팩트 측면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대표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절차 S3-3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대표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교정하기 위한 절차 S3-4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 관련 조치에 대한 효과성 S3-5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며, 중대한 리스크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
		S4-1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관련 정책 S4-2 임팩트 측면에서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절차 S4-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교정하기 위한 절차 S4-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 관련 조치에 대한 효과성 S4-5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며, 중대한 리스크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

[표9] ESRS Governance(지배구조) 지표 : G1~G6

<p>[G1] Business Conduct (비즈니스 수행방식)</p>	<p>G1 (총 6개의 요구사항)</p>	G1-1 기업 문화 및 비즈니스 수행 정책 G1-2 공급망 관계 구축 및 관리 G1-3 부패 및 뇌물 방지 G1-4 부패/뇌물을 수수 G1-5 정치적 영향력 및 로비 G1-6 결제 관행

3. ESRS(EFRAG) vs. IFRS S1, S2(ISSB) 비교 분석

현재 ISSB는 S1과 기후에 대한 S2의 공시 기준만 확정하였으며, ESRS는 10개의 토픽을 한 번에 제정하였다. 또한, ISSB가 산업별 특수성 반영을 SASB와 연계하였으나, ESRS는 향후 10개의 산업별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Non-EU 대상 기준서도 2024년에 발표 할 예정이다. ISSB의 경우 S2 외에도 추가 토픽에 대한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EFRAG와 ISSB는 서로간 상호운영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특히 ISSB는 S2를 제외한 중대 토픽의 경우 상세 기준서가 없을 때 ESRS를 참조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화를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GAP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ESRS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는 SEC와 다르게, EFRAG와 ISSB가 모두 GHG Protocol을 고려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이지만 ESRS에서 운영통제력(재무, 운영 통제)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과 Total emission 합산 공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결국, 기업들이 ESRS 기준으로 공시 준비가 되면 IFRS는 대응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차이점은 '중대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방대한 ESG 정보들을 공시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사 또는 연결기준 기업 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중대토픽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였던 GRI의 경우 기업의 활동이 외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 단일 중대성을 요구하였으며, IFRS는 투자자 관점의 단일 중대성으로 외부 사회환경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ESRS의 경우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한 중대성평가를 요구하는 '이중 중대성'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10] ESRS vs. IFRS 비교

1 공시 기준서 구성, 제정 현황 및 동향

구분	ESRS (EFRAG)	IFRS Sustainability (ISSB)
공시 기준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원칙 및 일반공시 요구 사항 (ESRS 1, 2) ESG 토픽 (총 10개) : E(환경) 1-5, S(사회) 1-4, G(지배구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ustainability1 (일반요구사항) IFRS Sustainability2 (기후관련 공시)
제정 현황 및 향후 추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7월 31일 ESRS 1st Set 최종 공시기준서 확정 24년 6월까지 ESRS 2nd Set 채택 예정 : <u>섹터별* 기준, 중소기업/Non-EU 기준</u> (*10개 산업 기준서 개발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6월 26일 S1, S2 최종 공시기준서 확정 재무제표 연결성, Scope 3 측정방법 및 범위 구체화 예정 (Global Partners와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추가 토픽별 기준서 발표 예정 : <u>생물다양성, 인적자본, 인권 등</u>
다른 지침 수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I – '가능한 완전 일치' 작업 중 ISSB – 부분 상호 운영성 논의 중 (상호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기준서가 없는 경우(S2를 제외한 종대토픽) GRI, ESRS 참조 가능 (상호보완)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구분	ESRS (EFRAG)	IFRS Sustainability (ISSB)
Scope 1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기준¹ 지배기업+종속기업 및 운영통제력 (operational control)이 있는 관계/ 공동기업 투자기업² : Scope 1, 2 개별 및 합산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기준 지배기업+종속기업 및 관계/공동기업, 투자기업[*] : Scope 1, 2 개별 공시 *GHG Protocol 적용
Scop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ope 3 카테고리 명시한 총 합계 및 중요한 배출량 카테고리별 세분화 공시 	

1) consolidated accounting group

2) investees such as associates, joint ventures, or unconsolidated subsidiaries

4. ESRS First Set 최종(안) 주요 내용 (2023.7.31)

EU 집행위는 이번 기준을 확정하면서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유럽의 그린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이 지속가능 금융 자본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환경 관련 예상 재무 효과 등에 대해 유예를 해주었고, 장애인, 안전, 워라밸, 교육 등 S1 일부지표에 대해서도 유예하였다. 특히, 직원수가 750명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Scope3 배출량이나 S1에 대한 부분을 1년 유예하였고, 그 외 2년 유예를 한 토픽들도 있다. 초기에는 E1과 S1이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나 이를 자발적 공시로 전환하였다. 다만, E1의 경우 중대 이슈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왜 공시에서 제외되었는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E1은 여전이 중요한 토픽으로 분류되고, 회사의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생물다양성이나 비고용 인력 관련 데이터들에 대해 자발적 공시 등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약 40 ~ 60% 정도 데이터 포인트가 축소되었고, ISSB와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한 작업들 (주요 용어, 개념의 통일성 등)을 진행하였다. EU집행위가 최종 확정한 First Set은 약 2개월~4개월 가량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표11] ESRS 공시시기 및 유예 사항

Timeline	'23.06	'23.07	'24.06	2026	2029
	초안 업데이트	Set 1 최종 확정	Set 2 제정 예정 (Non-EU 기준 등)	EU 내 대규모 기업 공시	Non-EU 지배기업 글로벌 연결기준 공시
공시 유예 적용			자발적 공시 확대		
• 모든 기업 대상			• ESRS2(일반공시 요구사항)만 의무 공시화		
1년 유예) - 환경 관련 영향, 리스크 관련 예상 재무 효과 (E1~E5) ¹ - 임직원 관련 일부 데이터(S1) ²			• 중대성 평가 결과 관계 없이 의무 공시 대상이었던 기후변화(E1) 및 임직원(S1)을 자발적 공시로 전환 * 단, 기후변화(E1)를 중대 토픽로 선정하지 않아 공시 제외 시, 중대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		
3년 유예) - 기후관련 영향,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예상 재무 효과에 대한 질적 공시 생략 가능			• 자발적 공시 추가 전환(Shall disclose → May disclose)		
• 직원 수 < 750명 기업 대상			- 생물 다양성 전환 계획(E4) - 비고용 인력 관련 일부 데이터(S1)		
1년 유예) - Scope 3 배출량/총 온실가스 배출량 [E1-6 中 일부] - 임직원(S1)			• 공시 대상 지표(Disclosure Requirements) 및 공시 대상 데이터(datapoints) 약 40 ~ 60% 축소		
2년 유예) - 생물다양성(E4),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고객(S4)					

1) 환경 오염[E2-6], 물[E3-5], 생물다양성[E4-6], 자원 사용[E5-6]

2) 장애인[S1-12], 건강 및 안전[S1-14], 일과 삶의 균형[S1-15]

5.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먼저 기업들은 과연 우리가 CSRD 공시 의무화 대상인지, 그럼 어떠한 대상으로 분류되서 언제부터 의무화가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될 경우 종속기업과 지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의 입법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현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EU내 매출액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

공시 기준에서는 자사 활동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활동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와 '공급망 인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결 기준 데이터 수집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은 높아졌으나 중요 주제 선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남게 되었다. 이에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 주제 선정 근거를 객관성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대성 평가 결과가 공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다.

특히 자격조건이 되는 제3자 독립기관으로부터 인증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 수준도 점차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를 위한 R&R 정립도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ESRS의 First Set은 산업 부문 상관 없이 제시된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발표할 산업별 기준이나 중소기업용/Non-EU 기업용 기준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한다.

[표12]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안
1 광범위해진 적용 기준에 따른 공시 의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EU 내 기업 뿐만 아니라 Non-EU 기업까지 적용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내 종속기업 보유	규제 및 지침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EU 내 기업 뿐만 아니라 Non-EU 기업까지 적용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내 종속기업 보유
2 공급망 관리 및 데이터 확보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포함한 전체 공급망 활동 정보 공시 요구(Scope 3, 인권 등)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現 CSRD는 Regulation이 아닌 DirectiveEU 내 종속기업 및 지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 입법 모니터링 필요EU 내 매출액 모니터링 필요
3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3자*에 의해 '인증된' 지속가능성 데이터 요구제공된 지속가능성 데이터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마련연결기준(일부 데이터의 경우 공급망 포함)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 필요데이터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화 및 협업 체계 마련 (R&R 명확화)데이터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경영진, 이사회 역할 강화

* 법정감사인 혹은 그 외 회계법인, 법정감사인 및 회계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윤리 교육, 독립성 교육을 받은 독립적인 인증서비스 제공자

PwC Korea ESG Platform

ESG Platform Leader

스티븐 강 Partner

steven.c.kang@pwc.com
+82-2-709-4788

Assurance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82-2-3781-9105

권미엽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김도연 Partner

kim.doyeon@pwc.com
+82-2-709-4079

이보화 Partner

bo-hwa.lee@pwc.com
+82-2-3781-0124

심재경 Partner

jea-kyoung.shim@pwc.com
+82-2-709-7083

PwC컨설팅

윤영창 Partner

youngchang.yun@pwc.com
+82-2-709-3354

김의준 Partner

euijun.kim@pwc.com
+82-2-709-8969

차경민 Partner

kyung-min.cha@pwc.com
+82-2-3781-9392

김진유 Partner

jin-you.kim@pwc.com
+82-2-3781-1486

삼일PwC Markets

장은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82-2-3781-0057

윤이나 Manager

ena.yun@pwc.com
+82-2-709-8539

S/N: 2309W-RP-036

© 2023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